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9의2] <개정 2023. 5. 23.>

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(제84조의3제1항 관련)

구 분	지급대상	보조비율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 · 19혁명부상자, 공상공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	소득·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 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사람	100분의 80
	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	
2.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 군인, 4·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 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	소득·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 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사람	100분의 40
	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수급권자	100분의 60